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아동의 권리*

홍 관 표**

목차

I. 들어가는 말	III.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개별 권리
II. 코로나19 팬데믹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의 주요 활동	영역별 검토 IV. 나오는 말

I 국문초록 I

2020년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팬데믹이 선언된 코로나19는 2021년 7월이 되어도 그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여러 변이 바이러스들이 새롭게 나타나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영향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지 않다. 사회적 위기는 더 가난한 나라, 더 가난한 지역, 더 가난한 가정, 더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더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더 가중된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은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이 어른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위험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은 독립적으로 사회·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우면서 아직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는 존재이므로, 사회적 위기 상황에 더 취약하고, 자신이 속한

* 이 논문은 2021년 6월 25일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변호사

논문접수일 : 2021. 7. 19., 심사개시일 : 2021. 8. 2., 게재확정일 : 2021. 8. 18.

지역, 가정, 환경 등에 따라 더 가중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유엔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 선언된 직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인권적 접근을 요청함과 아울러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아동의 권리 향유 및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어떠한 아동도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의 주요 활동을 살펴본 다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대두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을 아동권리협약 상 아동의 권리 영역별로 유엔이 제시하는 요청사항들과 함께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코로나19, 팬데믹, 감염병, 아동, 권리, 인권, 아동권리협약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의 국제적인 공식 명칭은 ‘Coronavirus disease(COVID-19)’이다.¹⁾ 국내적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혹은 줄여서 ‘코로나19’로 부르고 있다.²⁾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중국 지역사무소가 중국 우한 지역의 바이러스성 폐렴을 세계보건기구에 처음 보고했을³⁾ 당시만 해도, 이 신

-
- 1)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Taxonomy of Viruses, ICTV)는 2020년 2월 11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이름을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라고 발표했고,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새로운 질병의 명칭을 ‘Coronavirus disease(COVID-19)’로 발표했다.
 - 2)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2월 1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명명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10판, 2021. 5. 17., 89면.
 - 3) 세계보건기구 웹사이트 중 “시간표: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0 대응(Timeline: WHO’s COVID-19 response)” 참조.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

중 감염병이 현재와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20년 1월 13일 중국 이외의 국가로는 처음으로 태국 공중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해당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는 발표가 있었고,⁴⁾ 세계보건기구 중국 지역사무소의 최초 보고로부터 약 70일이 지난 2020년 3월 11일(스위스 현지 시각)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공식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당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수준과 심각성 수준을 우려하면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⁵⁾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례는 114개국, 약 118,000건에 사망자는 4,291명에 불과했다.⁶⁾ 그로부터 약 16개월이 지나는 동안 코로나19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이 되었고,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며⁷⁾ 그 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021년 7월 16일 현재 전 세계에서 확진된 누적 사례는 188,655,968건, 누적 사망자는 4,067,517명에 이르고 있다.⁸⁾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었던 2020년 3월 11일과 비교하여, 확진 사례에서 약 1,599배, 사망자 수에서 약 948배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여러 국가

novel-coronavirus-2019/interactive-timeline#!) (last visited July 17, 2021).

4) *Ibid.*

5) *Ibid.*

6) <<https://twitter.com/WHO/status/1237776790157963267>> (last visited July 17, 2021).

7) 세계보건기구 웹사이트 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 변이 추적”(Tracking SARS-CoV-2 variants) 웹페이지에 의하면, 2021년 7월 16일 현재 ‘우려 변이’(Variants of Concern, VOC)로 알파(영국), 베타(남아프리카공화국), 감마(브라질), 델타(인도) 4종, ‘관심 변이’(Variants of Interest, VOI)로 에타(다수의 국가), 이오타(미국), 카파(인도), 람다(페루) 4종이 있다. <<https://www.who.int/en/activities/tracking-SARS-CoV-2-variants/>> (last visited July 17, 2021).

8) 세계보건기구 웹사이트 중 “코로나19 대시보드(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참조. <<https://covid19.who.int/>> (last visited July 17, 2021).

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약간 주춤했으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2021년 7월 15일 하루에만 국제적으로 535,332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8,425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⁹⁾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으로 유입된 것은 2020년 1월 19일이였다. 2020년 1월 19일 인천공항검역소에서 검역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입국자가 다음 날인 1월 20일 오전 인천의료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국내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¹⁰⁾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관심’ 수준이었던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였는데,¹¹⁾ 7일 뒤인 1월 27일 국내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자,¹²⁾ 다시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¹³⁾ 이후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2020년 2월 17일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2월 23일까지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 확진자가 556명까지 500명 이상 증가하게 됨에 따라,¹⁴⁾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범정부대책회의를 열고 감염병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로 다시 상향함과 아울러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출범시켜 범정부적 총

9) *Ibid.*

1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 - 검역단계에서 해외유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확인,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대응, 2020. 1. 20.

11) 강주리, ‘중국 우한 폐렴’ 국내서 확진자 첫 발생... 위기경보 ‘주의’ 격상, 서울신문 인터넷판 2020. 1. 20.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0500077&wlog_tag3=naver> (2021. 7. 17. 방문).

1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2020. 1. 27.

1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 격상, 2020. 1. 27.

1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3일 09시), 2020. 2. 23.

력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¹⁵⁾ 그리고 그 후 약 17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 이른바 2차 유행,¹⁶⁾ 3차 유행,¹⁷⁾ 4차 유행¹⁸⁾을 거치면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백신도 치료제도 없으면서 증상 발현 전부터 감염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감염력을 지닌 이 신종 감염병에 대하여

15)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 브리핑, 2020. 2. 23.

16) 2020년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299.7명으로 이전 2주간의 35명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하였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8월 19일부터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치했고, 2020년 8월 30일부터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질병관리청·대한의사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감염병 뉴스레터 No.5 Issue 17, 2020. 9. 3.자.

17) 2020년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1주 동안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255.6명으로 직전 1주간의 122.4명보다 133.2명이 증가하였고, 2020년 11월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다. 이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0년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1주 동안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1,016.7명까지 이르렀다가 12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특별 방역 강화조치 시행의 효과로 2020년말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질병관리청·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감염병 뉴스레터 No. 5 Issue 23, 2020. 11. 25.자; 질병관리청·대한의사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상황, 감염병 뉴스레터 No. 6 Issue 01, 2021. 1. 22.자.

18) 2021년 6월 29일부터 700명대로 늘어난 1일 국내 발생 신규확진자 수는 7월 7일 3차 유행 당시 최고치였던 1일 국내 발생 신규확진자 1,216명(2020년 12월 24일)을 넘어 1,227명을 기록했고, 이후 7월 13일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후 최고치인 1,568명까지 이르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 12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였다.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25일 0시), 2020. 12. 25.;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0시 기준), 2021. 6. 30.;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0시 기준), 2021. 7. 8.;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2021. 7. 9.;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 2021. 7. 14.

기 위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마스크를 쓰고 소독제를 사용하며 사람들 사이에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¹⁹⁾ 등의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데 치중했다. 음식점, 쇼핑몰, 영화관, 공연장은 물론, 학교, 종교시설, 회사, 관공서 심지어 의료기관도 필요한 경우 방역을 위해 문을 닫아야 했고, ‘비대면-온라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가 화이자 백신(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에 대하여 처음으로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이후 모두 7개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하면서,²⁰⁾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의 방향도 백신 예방접종을 병행하여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26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405명 발생한 가운데, 18,489명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해오고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 2021년 7월 16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의 누적 접종자는

19) 다른 사람과 최소한 1m의 거리를 유지할 것, 마스크를 쓸 것, 폐쇄되고 혼잡하면서 밀접 접촉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할 것, 사람들은 가급적 야외에서 만날 것, 실내에서는 환기를 잘 시킬 것, 손을 잘 씻을 것,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재채기할 때에 팔꿈치를 구부려 입과 코를 가릴 것 등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코로나19 예방법이다. 세계보건기구 웹사이트 중 “대중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조언”(Coronavirus disease (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참조.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advice-for-public>> (last visited July 17, 2021).

20) 세계보건기구가 2021년 6월 15일까지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백신’(Pfizer-BioNTech) ‘아스트라제네카 백신’(Oxford/AstraZeneca), ‘노바백스 백신’(Serum Institute of India, Novavax), ‘얀센 백신’(J&J/Janssen), ‘모더나 백신’(Moderna), ‘시노팜 백신’(Sinopharm/BBIBP), ‘시노백 백신’(Sinovac)이다. WHO, Status of COVID-19 Vaccines within WHO EUL/PQ evaluation process, 2021. 7. 15. 참조. <<https://www.who.int/teams/regulation-prequalification/eul/covid-19>> (last visited July 17, 2021).

16,096,012명(2020년말 주민등록인구 대비 집중률 31.3%), 접종완료자는 6,507,107명(2020년말 주민등록인구 대비 집중률 12.7%)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다,²¹⁾ 최근 감염력이 강한 델타형(인도 변이) 변이 바이러스²²⁾에 의한 국내 감염 사례도 빠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이어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이루어지는²³⁾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비대면-온라인’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16일 현재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6,500명이고, 사망자는 2,055명이다.²⁴⁾

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때에 그 위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의 파급효과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 가난한 나라, 더 가난한 지역, 더 가난한 가정, 더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더 소외된 사람, 소수자인 사람, 약자인 사람에게 더 가중된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은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은 독립적으로 사회·경제생활을 하기 어렵고 아직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는 존재라는 점 자체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 지역, 가정, 환경, 사회적 집단, 인종, 민족 등에 따라 더 가중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직접적인 건강상의 영

21)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0시 기준), 2021. 7. 17.

22) 남빛나라, WHO “델타 변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 변이된다”, 뉴스스, 2021. 6. 19.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9_0001482107&cID=10101&pID=10100#) (2021. 6. 21. 방문).

2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2021. 7. 14.

24) 질병관리청, 앞의 자료(각주 21).

향에 국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재난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적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의하여 아동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 선언된 직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인권적 접근을 요청함과 아울러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아동의 권리 향유 및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어떠한 아동도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해왔다. 또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인권조약기구(human rights treaty bodies)인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각 국에 아동의 권리의 보호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요청되는 사항들을 정리한 문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의 주요 활동을 먼저 개관한 다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 영역별로 국제인권적 요청사항과 통계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코로나19 팬데믹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의 주요 활동

1. 유엔 10개 인권조약기구 의장단의 공동 성명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 선언된 직후인 2020년 3월 24일 유엔의 10개 인권조약기구²⁵⁾ 의장들은 공동 언론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퇴치에 있어서 인권적 접근을 요청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의장이자 의장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힐러리 그베데마(Hilary Gbedemah)는 코로나19 전략에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에 의해서만 팬데믹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공중보건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²⁶⁾ 이 공동 성명에서 10명의 전문가들은 아동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이동 제한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정부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격학습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활용해야 하고, 장애학생들도 동일한 교육기회에 동등하게 접

25)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10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위원회 조직인 인권조약기구로,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사회권규약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고문방지소위원회'(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강제실종위원회(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이주노동자 위원회(Committee on Migrant Workers)가 여기에 해당한다.

26) UN OHCHR, Press Release-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call for human rights approach in fighting COVID-19, 2020. 1. 24.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42&LangID=E>> (last visited July 17, 2021).

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²⁷⁾

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

아동권리위원회는 10개 인권조약기구 의장들의 공동 언론브리핑 이후, 2020년 4월 8일 코로나19 팬데믹의 아동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향에 관하여 경고하면서 각 국에 아동의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 성명서 내에는 팬데믹 상황 하에서의 아동의 권리 제한의 조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 반영, 휴식·여가·오락·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권리의 향유, 온라인 학습의 조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의 섭취 보장, 의료·물·위생·출생등록 등 기본서비스의 제공 유지, 핵심적인 아동보호서비스의 유지, 취약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조치, 코로나19에 관한 지침 위반을 이유로 한 체포·구금 금지, 코로나19와 감염예방법에 대한 정보접근권, 팬데믹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아동의 참여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²⁸⁾ 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서에 포함된 개개의 요청사항에 관하여는 뒤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들을 살펴볼 때에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3.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보고서

유엔 사무총장은 2020년 4월 15일 “아동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한 정책보고서(Policy Brief)를 발간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

27) *Ibid.*

28) UN OHCHR, Compilation of statements by human rights treaty bodies in the context of COVID-19, 2020. 9., pp.34-36.

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는 2020년 4월 16일에 이 정책보고서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고맙게도 현재까지 아이들이 대부분 코로나19의 가장 심각한 증상을 겪고 있지는 않으나 아이들의 삶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모든 가족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아동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²⁹⁾ 이 정책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제2차 세계대전과 UN 설립 이후에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시험이라는 인식을 밝히고 있다.³⁰⁾

이 정책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바이러스 자체에 의한 감염’,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고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에 따른 직접적 사회경제적 영향’,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 지연에 따른 잠재적인 장기 영향’의 세 가지 경로로 구분하고, 다시 코로나19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빈곤화’, ‘학습’, ‘생존 및 건강’, ‘안전’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복합적인 방식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³¹⁾

보고서는 물리적 거리두기 및 폐쇄조치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그러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미치는 치명적 영향,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세계 188개국의 학교 폐쇄와 그로 인한 15억 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영향 그리고 학습과 인적 자원 개발에 있어서의 잠재적 손실, 원격 학습의 한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유아 사망률 증가와 예방접종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중단 문제,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영양 공급원 문

29) UN News, UN Chief calls for greater protection for children caught up in COVID-19 crisis, 2020. 4. 16. <<https://news.un.org/en/story/2020/04/1061892>> (last visited July 17, 2021).

30) UN,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2020. 4. 15., p.4.

31) *Ibid.*, pp.2-3.

제, 여학생 중퇴와 청소년 임신 문제, 물과 위생 서비스 중단에 따른 수인성 질병 문제, 물리적 거리두기와 전염병에 따른 불확실성이 유발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위험 증가와 아동보호서비스 중단·축소 문제, 아동의 개인정보 문제, 빈곤아동과 취약계층 아동(난민아동, 장애아동, 이민아동, 시설거주아동 등)에 대한 불균형적인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으로 다루고 있다.³²⁾

아울러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위와 같은 위협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연대’, ‘더 많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³³⁾

4.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코로나19 지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³⁴⁾는 2020년 4월 27일 “코로나19 지침”(COVID-19 Guidance)을 발표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인권 전반에 걸친 존중이 팬데믹에 대한 공중보건상의 대응과 회복의 성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① 의료서비스의 이용, ② 긴급조치, ③ 모든 구성원 포용(Leaving no one behind), ④ 주거, ⑤ 장애인, ⑥ 고령자, ⑦ 구금시설 수용자 및 시설생활인(People in detention and institutions), ⑧ 정보 및 참여, ⑨ 낙인화, 외국인혐오, 인종차별, ⑩ 이주민, 강제이주민 및 난민, ⑪ 사회경제적 영향, ⑫ 음식, ⑬ 사생활, ⑭ 아동, ⑮ 청년, ⑯ 성별, ⑰ 물, 배수, 위생, ⑱ 원주민, ⑲ 소수자, ⑳ 기업

32) *Ibid.*, pp.6-12.

33) *Ibid.*, p.14.

34) 전 칠레 대통령(2006~2010 및 2014~2018)인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가 2018년 9월 1일부터 제7대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 인권, ㉑ 국제적 및 일방적 제재, ㉒ 인신매매, ㉓ 국제협력 및 연대 등 23개 분야에 관하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인권적 측면에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³⁵⁾³⁶⁾

코로나19 지침은 아동과 관련하여, 국가의 팬데믹 대응·회복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있어 아동 보호 요구 및 아동의 권리에 더 많은 관심 요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자 팬데믹에 대한 대응의 중심이 되도록 할 필요, 학교 폐쇄에 따른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중단 문제, 소녀들의 교육, 건강, 경제적 기회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우려, 외출금지 및 봉쇄에 따른 아동에 대한 폭력 위험 증가 우려, 위기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및 보호소 제공이 우선적으로 지속될 필요,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실업에 따른 아동의 빈곤 우려, 노숙아동·이주아동·난민아동·인신매매피해아동·분쟁지역거주아동·장애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은 아동의 특별한 위험에 관한 사항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³⁷⁾

5.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툴킷(toolkit)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조약과(Human Rights Treaties Branch)는 2020년 5월(7월 15일 최종 업데이트) 국제인권조약의 규정과 이에 대한 인권조약기구의 해석 그리고 개인진정 심판례를 분석하여, 개별 국가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국제

35)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 중 '코로나19 지침'(COVID-19 Guidance) 웹페이지 참조.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COVID19Guidance.aspx>) (last visited July 17, 2021).

36) 이에 대한 국문 번역본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COVID-19 관련 국제 인권 규범 모음집, 2020. 5., 31-45면.

37) *Ibid.*, 39-40면.

인권조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인권조약기구가 분석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국제인권조약의 조문별 참고사항을 기재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조약법 견해 및 심판례에 관한 인권조약기구 내부용 툴킷”(Internal HRTB toolkit of treaty law perspectives and jurisprudence in the context of COVID-19)을 발간했다. 이 툴킷은 서문에서 긴급상황이 인권 의무를 무시할 수 있는 백지수표는 아니라고 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발언³⁸⁾ 내용을 소개하면서,³⁹⁾ 해당 툴킷이 유엔과 당사국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함에 있어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는지를 국가별로 분석하는데 법률적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⁴⁰⁾

이 툴킷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핵심 국제인권조약으로 분류⁴¹⁾하고 있는 9개 국제인권조약⁴²⁾과 1개 선택의정서⁴³⁾에 대하

38) 해당 발언은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020년 4월 9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하여 한 공식 브리핑의 내용이었다. UN OHCHR, Press Release-COVID is “a colossal test of leadership” requiring coordinated action, High Commissioner tells Human Rights Council, 2020. 4. 9.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85&LangID=E>> (last visited July 17, 2021).

39) UN OHCHR, Internal HRTB toolkit of treaty law perspectives and jurisprudence in the context of COVID-19, 2020. 5., p.3.

40) *Ibid.*

41)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 중 “핵심 국제인권문서 및 그 감시기구”(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their monitoring bodies) 웹페이지 참조.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oreInstruments.aspx>> (last visited July 17, 2021).

4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여 해당 국제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의 조문별로 당사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해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권리(제3조 제1항), 생명·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제6조), 적절한 정보에 대한 접근(제17조), 성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학대·방임·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9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34조),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제24조 제1항),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제27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18조 제1항 (a)호), 휴식·여가·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권리(제31조) 등 10개 조문 9개 권리 영역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⁴⁴⁾

6. 소결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직후부터 유엔은 사무총장, 인권조약기구 의장단, 아동권리위원회,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여러 단계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에게 신체적·심리적·정서적으로 미칠 단기적 및 장기적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칠 위협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각 국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협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4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이다.

44) UN OHCHR, *op. cit.*, pp.19-22 *supra* note 39).

아동의 인권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청사항을 제시해왔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방역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나, 1991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는데 부족하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아동권리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제출⁴⁵⁾ 및 심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유의미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유엔의 우려 및 요청사항들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유엔의 우려 및 요청사항들이 상당 부분 반복되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중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과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틀킷에 포함된 요청사항들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Ⅲ.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개별 권리 영역별 검토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개별 권리 영역별로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과 아동의 권리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해당 권리 영역별로 먼저 유엔이 제시한 요청사항을 확인한 다음, 국내적 검토 사항을 기술하고자 한다.

4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9월 18일 및 19일에 우리나라의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같은 달 27일에 채택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2024년 12월 19일까지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UN C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KOR/CO/5-6), 2019. 10., para. 54.

1.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조치의 근거 법률

가. 유엔의 요청사항

아동권리협약은 각 개별 권리별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 일반에 관한 제한 규정⁴⁶⁾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아동권리위원회는 위기상황에서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인권의 향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위기상황에서 국제인권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권의 향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비례적이어야 하고,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⁴⁷⁾

나. 국내적 검토

국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예방 등 대응조치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이 있다.

재난안전법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을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제3조 제1항 나목),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46)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2항, 사회권규약 제4조가 이러한 일반적 제한규정에 해당한다.

47) UN OHCHR, *op. cit.*, p.34, para. 1. *supra* note 28).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근거(제14조)를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코로나19에 대한 대부분의 대응조치는 그 법적 근거를 감염병예방법에 두고 있다. 코로나19는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중후군’(제2조 제2호 타목)에 해당한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제18조, 제18조의4),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제34조의2),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제37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제41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치(제46조), 방역조치(제47조), 예방조치(제49조), 감염병에 관한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 등 강제처분(제4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감염병의 발생 등을 이유로 한 유치원 휴업·휴원 명령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휴업·휴교 명령의 경우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도록(제50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 대한 등교중지(제8조), 치료 및 예방조치(제11조), 휴업이나 등교수업일 조정 및 휴교(휴원)(제1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은 휴업 및 휴원 명령(제31조)을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은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제64조)과 함께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제24조 제3항 제1호)에 관하여 그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관한 치료 및 예방조치(제32조), 휴원명령(제43조의2)을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예방 등 대응조치는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상의 ‘사례 정의’ 형식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⁴⁸⁾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증후군의 특성상 검사기준이나 진단기준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규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례 정의’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감염병예방법,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고시)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사례 정의’로 검사기준이나 진단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⁴⁹⁾

2. 차별받지 않을 권리(아동권리협약 제2조)

가. 유엔의 요청사항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존중과 함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⁵⁰⁾를 요청했다.

48)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앞의 지침(각주 2), 9-10면.

49) 홍판표,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검토, 인권법평론 제26호, 2021, 230-232면 참조.

50) 스위스에 기반을 둔 국제아동지원단체인 ‘Terre des hommes’(인간의 대지)와 벨 페스트 퀸스대학교의 아동권리센터(Centre for Children’s Rights at Queen’s University Belfast)가 공동으로 주도하고 유엔 및 30여개 단체가 협력하여 137개국의 8세~17세 아동 총 26,2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인 ‘#CovidUnder19’의 결과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와 삶 전반에 걸쳐 코로나바이러스의 부정적 영향이 공평하게 미치지 않으며 이주아동·난민아동·장애아동 등 이미 권리침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아이들에게 더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Laura Lundy *et al*, “Life

팬데믹에 의하여 야기된 이례적인 상황으로 취약성이 더 가중되는 아동들을 보호할 것. 이러한 아동에는 장애아동; 빈곤아동; 노숙아동 (children in street situations); 이주아동, 망명아동, 난민아동, 국내강제 이주아동; 소수민족아동 및 원주민아동; HIV/AIDS를 포함한 기저질환을 보유한 아동; 경찰유치장, 교도소, 보호센터, 이주민수용소·캠프 내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구금된 아동; 그리고 시설생활아동이 포함된다. 각 국은 취약한 상황 하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와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있어서 모든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⁵¹⁾

당사국은 특히 장애아동, 빈곤아동, 노숙아동, 이주아동, 망명아동, 난민아동 및 국내 강제이주아동, 소수자 및 원주민 아동, 대안양육 아동, HIV/AIDS와 같은 기저질환을 보유한 아동 및 자유가 박탈된 아동과 같이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앞서 언급된 권리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⁵²⁾

나. 국내적 검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영향이 공평하거나 균등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적으로도 동일하다.⁵³⁾

Under Coronavirus: Children's Views on their Experiences of their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Vol. 29, Issue 2, 2021, pp.261-285. available at <https://brill.com/view/journals/chil/29/2/article-p261_261.xml> (last visited July 17, 2021).

51) UN OHCHR, *op. cit.*, p.35, para. 7. *supra* note 28).

52) UN OHCHR, *op. cit.*, p.17, para. 2. *supra* note 39).

53) 시설보호아동에 관한 연구로, 장영인, 코로나19에 대한 시설보호아동의 경험: 권리현황과 과제, 2021년도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21, 69-97면; 발달장애아동에 관한 연구로, 한진희·심재환·정세원·최진우, 코로나 19로 인한 발달장애 아동의 온라인 교육 문제 탐색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확진된 아동에 대한 차별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아동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 2020년 2월 19일로 보인다.⁵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접촉자조사와 이동동선조사를 실시하며⁵⁵⁾ 그 이동경로를 역추적하여 접촉자⁵⁶⁾로 구분되는 사람은 감염병의심자로서⁵⁷⁾ 자가격리 조치 대상이 되고,⁵⁸⁾ 다녀간 장소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일시적 폐쇄,⁵⁹⁾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⁶⁰⁾ 소독⁶¹⁾ 등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아동의 경우 자신과 가족이 감염병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와 방역조치의 결과로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동

연구보고서, 2020;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에 관한 연구로, 신영미·권순범, 코로나19로 인한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변화와 행복감의 관계, 아동과 권리 제25권 2호, 2021, 227-245면; 이주배경아동에 관한 연구로, 김강남, 코로나19로 달라진 이주배경아동의 학습과 일상, 다문화와 평화 제15집 1호, 2021, 118-142면.

- 54) 최경준, 수원에서 '코로나19' 첫 초등학교 확진자 발생, 오마이뉴스, 2020. 2. 19.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568) (2021. 7. 17. 방문).
- 55)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앞의 지침(각주 2), 32면.
- 56)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을 토대로 코로나19의 접촉자 범위를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 간, i)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이 있었거나, ii)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거나, iii)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로 예시하고 있다. *Ibid.*, 39면.
- 57)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호의2 가목.
- 58)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 59)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 가목.
- 60)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 나목.
- 61)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5호.

네 가게 등에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⁶²⁾ 또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아동이 편견, 비하, 차별 또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⁶³⁾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판”이나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⁶⁴⁾ 및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⁶⁵⁾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권리(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가. 유엔의 요청사항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은 입법·사법·행정기관은 물론 공공·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62) 확진된 아동의 양육자의 죄책감 진술에 관하여, 도승이·김효진·송미령, 코로나19 확진 아동의 경험 : 권리현황과 과제, 2021년도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21, 109면 참조.

63) 확진된 아동의 일상생활 복귀 시 어려움에 관하여는, *Ibid.*, 119-120면 참조.

64)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 2020. 8. 11.

65)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2021. 1. 28.

코로나19 팬데믹이 재원의 이용가능성에 증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이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은 자원 배분에 관한 제한과 결정을 포함한 팬데믹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반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⁶⁶⁾

당사국은, 특히 비상사태이거나 필수적인 서비스에 관한 자원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⁶⁷⁾

나. 국내적 검토

(1)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아동의 이익 반영

코로나19에 대한 대부분의 대응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에서 대응조치 전반에 걸쳐 아동의 이익을 특별히 고려하도록 하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호흡기 관련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감염취약계층에 포함시킨 것이 감염병 예방법이 아동을 특별한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유일한 예로 보인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로 다시 감염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문도 엄밀히 살펴보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일부⁶⁸⁾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

66) UN OHCHR, *op. cit.*, p.34, para. 1. *supra* note 28).

67) UN OHCHR, *op. cit.*, p.17, para. 3. *supra* note 39).

68)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2항 제4호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로 특별히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으로 보기 어렵다.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기준으로 중앙방역 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이 있다. 해당 지침 내에서도 방역 대책 전반에 걸친 아동의 이익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장 최근인 2021년 5월에 제시된 제10판의 내용 중 아동과 관련된 사항은 감염병의심자인 영유아⁶⁹⁾의 자가격리 시에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와 공동격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실상 전부이다.⁷⁰⁾ 아동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며 예후가 좋은 점⁷¹⁾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아동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을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게 수정·추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한 바 있으며,⁷²⁾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0년 12월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자문을 얻어 소아⁷³⁾ 확진자의 자가치료와 관련된 안내서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⁷⁴⁾

①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② 만 65세 이상의 노인, ③ 임산부, ④ 기저질환자, 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69) 해당 지침은 ‘영유아’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앞의 지침(각주 2), 50면.

70) *Ibid.*, 50면.

71) *Ibid.*, 265면.

72)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2020. 2.

73) 해당 안내서는 ‘소아’의 기준을 ‘만 12세 이하’로 기술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2020. 12. 29., 2면.

74) *Ibid.*;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제2판, 2021. 2. 17.

(2) 코로나19에 관한 아동 통계 문제

코로나19의 아동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방역 대책에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 코로나19에 관한 아동 통계이다. 그런데 코로나19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국내 발생 현황’ 자료를 통해서도 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따른 아동 즉 ‘만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검사 통계나 자가·시설격리자 통계, 확진자 통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진단검사 통계와 자가·시설격리자 통계는 성별 및 연령별로 구분된 통계가 아예 제공되지 않고 있고, 확진자 통계는 연령별 통계가 제공되지만 10세(0~9세) 단위이며 성별 통계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아동 확진자의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 없다. 교육부에서 매주 목요일 보도참고자료로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에 대한 진단검사 현황, 확진자 발생 현황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⁷⁵⁾ 이 역시 성별 통계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에 관한 통계는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COVID Data Tracker’⁷⁶⁾를 통해 코로나19에 관한 미국 전역의 가장 종합적인 통계를 제공하지만, 이와 별도로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와 아동병원협회(Children’s Hospital Association)가 공동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매주 목요일 기준 일주일 간격으로 아동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75) 2021년 7월 14일까지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 중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누적 학생 수는 1,138,247명이었고, 코로나19로 확진된 누적 학생 수는 6,832명이었다. 교육부, 보도참고자료 -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 (7.15), 2021. 7. 15.

76)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datatracker-home>>

사례, 아동 코로나19 확진사례의 변화, 아동의 진단검사 통계, 아동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율, 아동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미국 전체 및 각 주별 통계로 제공하고 있다.⁷⁷⁾ 미국소아과학회와 아동병원협회는 FAQ를 통해 이러한 자료수집의 목적을 코로나19가 미국 내 아동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매주 포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⁷⁸⁾ 다만, 미국 소아과학회와 아동병원협회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만 18세가 아닌 각 주별 아동연령기준에 따라 자료를 취합한다고 밝히고 있다.⁷⁹⁾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아동에 관한 코로나19 통계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아동권리협약 제6조)

가. 유엔의 요청사항

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당사국이 아동의 고유한 생명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아동의 생명권, 생존 및 발달권 보장 차원에서 아동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염된

77) 미국소아과학회 웹사이트 중 “아동과 코로나19: 주단위 자료 보고서”(Children and COVID-19: State-Level Data Report) 웹페이지 참조. <<https://services.aap.org/en/pages/2019-novel-coronavirus-covid-19-infections/children-and-covid-19-state-level-data-report/>> (last visited July 17, 2021).

78)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nd Children’s Hospital Association, Children and COVID-19: State Data Report, 2021. 7. 8., p.30. available at <<https://downloads.aap.org/AAP/PDF/AAP%20and%20CHA%20-%20Children%20and%20COVID-19%20State%20Data%20Report%207.8%20FINAL.pdf>> (last visited July 17, 2021).

79) *Ibid.*

아동을 치료하도록 요청했다.

모든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권을 보유하고,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아동의 생존 및 발달권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염된 아동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⁸⁰⁾

나. 국내적 검토

(1)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사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확진된 18세 미만의 아동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2021년 7월 16일 현재 19세 이하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므로,⁸¹⁾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사례는 없다고 하겠다.

(2) 코로나19와 아동의 자살, 자살 위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아동의 자살이 증가하거나 자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통계청이 2021년 2월 ‘2020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출생·사망통계를 잠정적으로 집계⁸²⁾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에 전체 사

80) UN OHCHR, *op. cit.*, p.17, para. 4. *supra* note 39).

81) 코로나19 공식 웹사이트 중 ‘국내 발생 현황’ 웹페이지 참조.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1&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2021. 7. 17. 방문).

82)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는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출생, 사망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잠정 결과로, 2020년에 발생한 출생·사망 중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신고분 및 향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연신고분을 추정하여 집계·분석한 결과이고, ‘사망원인통계’와는 잠정치와 확정치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통계청, 보도자료 -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

망자 수는 30만 5,100명으로 2019년 대비 1만 명(3.4%) 증가했으나, 20대와 60대 이상에서 2019년 대비 사망자가 증가했고, 19세 이하의 연령대(0세, 1-9세, 10-19세)에서는 사망자 수가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전년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⁸³⁾ 구체적으로 0세는 2019년 800명에서 2020년 700명(남 400명, 여 300명)으로, 1-9세는 400명에서 300명(남 200명, 여 100명)으로 각각 사망자 수가 감소했고, 10-19세는 800명(남 500명, 여 300명)으로 동일했다.⁸⁴⁾ 향후 사망원 인통계가 확정·발표되어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⁸⁵⁾⁸⁶⁾ 일단 2020년의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로만 보면, 2020년 동안 국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아동 일반에 대하여 생명권에 관한 새롭고 현저한 위기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자살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로 ‘청소년건강행태조사’⁸⁷⁾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⁸⁸⁾⁸⁹⁾가 있다.

정 결과, 2021. 2. 23., 일러두기 참조.

83) *Ibid.*, 14면.

84)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는 사망자 수를 백 명 단위까지만 반올림하여 제공하고 있다. *Ibid.*, 14면.

85) 인구동향조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수된 사망신고서 및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작성되는 ‘사망원인통계’는 매년 9월 발표 예정이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통계정보보고서, 2019. 9., 1-2면.

86)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21년 7월 5일에 「2021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했으나, 이는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보도자료 - 우리나라의 자살현황을 보여주는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2019년 통계 기준), 2021. 7. 2., 3면.

87)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청소년의 흡연, 음주, 비만, 식생활,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학교 1학년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주관 하에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2021. 3. 26.

88)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초등학교 4학년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

2020년에 실시된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⁹⁰⁾ 통계에 따르면, ‘자살 생각률’,⁹¹⁾ ‘자살 계획률’,⁹²⁾ ‘자살 시도율’⁹³⁾ 모두 전반적으로 2020년의 조사 결과가 2019년의 조사 결과보다 낮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⁹⁴⁾ 등교수업을 조정해

〈표 1〉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자살 생각률, 계획률 및 시도율 (단위: %)

구분	자살 생각률		자살 계획률		자살 시도율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전체	13.1	10.9	4.0	3.6	3.0	2.0
중학교	14.1	10.2	4.6	3.7	3.6	2.0
고등학교	12.2	11.5	3.4	3.4	2.4	2.0
남학생	9.4	8.1	3.1	2.8	1.9	1.4
중학교	9.4	7.4	3.3	2.8	2.2	1.3
고등학교	9.3	8.8	2.9	2.7	1.7	1.4
여학생	17.1	13.9	5.0	4.4	4.0	2.7
중학교	19.2	13.3	5.9	4.6	5.1	2.8
고등학교	15.3	14.5	4.1	4.2	3.0	2.7

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17. 12., 1면 및 13면.

- 89)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자살에 대한 생각과 이유’에 관한 질문은 초등학생 대상 설문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고생 대상 설문지에만 포함되어 있다. *Ibid.*, 13면.
- 90)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총 800개 학교(중학교 400개, 고등학교 400개)의 57,9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이 중 54,948명(94.9%)이 참여하였다.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앞의 책(각주 87), 8-11면.
- 91) 분석대상자 중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Ibid.*, 196면.
- 92) 분석대상자 중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Ibid.*, 200면.
- 93) 분석대상자 중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Ibid.*, 204면.
- 94) 2020학년도 1학기 개학은 2020년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부,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2021. 5., 94면.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원격수업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감소와 선후배나 친구들과의 갈등 문제 감소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실시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도, 비슷한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2019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늘었고, ‘자살을 가끔 생각한다’는 응답비율이나 ‘자살을 자주 생각한다’는 응답비율은 2019년 조사결과보다 줄었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와 관련하여,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8.0%에서 2020년 4.8%로 감소한 점이 특징적이다.

〈표 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자살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전체	69.6	73.0	25.9	23.1	4.5	3.9
남자	77.9	80.5	19.6	17.6	2.6	2.0
여자	60.6	65.0	32.8	29.1	6.6	5.9
중학교	70.9	73.9	24.9	23.3	4.2	2.9
고등학교	68.5	72.2	26.7	23.0	4.8	4.8
일반계고	67.2	70.8	27.8	24.5	5.0	4.8
특성화계고	74.0	78.2	22.0	16.8	4.0	5.0

2020년에 실시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위와 같은 결과로만 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등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정신적으로는 더 건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5.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가. 유엔의 요청사항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출생등록 등 아동을 위한 기본서비스의 제공을 유지할 것. 출생등록서비스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⁹⁵⁾

나. 국내적 검토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중단된 적은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는 무관하지만,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었고, 모든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들⁹⁶⁾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95) UN OHCHR, *op. cit.*, pp.34-35, para. 5. *supra* note 28).

96) 2021년 7월 16일 현재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과 관련하여 총 10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7월 16일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20년 7월 23일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2021년 1월 21일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021년 1월 28일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2021년 2월 4일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2021년 2월 25일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2021년 3월 2일 김민철의원 대표발의, 2021년 3월 15일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같은 날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2021년 5월 11일 송재호의원 대표발의)이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6. 부모와 함께 살 권리, 가정환경 상실 아동 지원(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0조, 제20조)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이혼이 증가하게 되면, 아동인 자녀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부모와 함께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는 아동의 삶에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통계청이 2021년 3월에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⁹⁷⁾에 따르면, 2020년 이혼건수는 10만 7,000건으로 전년 대비 4,000건(3.9%) 감소했고,⁹⁸⁾ 혼인지속기간을 기준으로 20년 이상인 이혼만 전년 대비 3.2% 증가했을 뿐,⁹⁹⁾ 혼인지속기간이 20년에 이르지 않은 이혼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나타냈다.¹⁰⁰⁾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2020년 중 4만 5,000건(42.3%)이었는데, 이는 2019년의 4만 9,000건에 비해 8.1% 감소한 수치이다.¹⁰¹⁾ 이와 같은 ‘2020년 혼인·이혼 통계’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이혼이 증가하여 가정이 해체되고 그에 따라 아동의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더 문제시 되는 상황은 2020년에 한정해서 전반적인 추세로만 보자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97) ‘2020년 혼인·이혼통계’는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의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결과로, 신고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발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통계청, 보도자료 - 2020년 혼인·이혼 통계, 2021. 3. 17., 일러두기 참조.

98) *Ibid.*, 10면.

99)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에서 전년 대비 이혼율이 증가했다.*Ibid.*, 21-24면.

100) *Ibid.*, 25면.

101) *Ibid.*, 26면.

7. 아동의 견해 존중(아동권리협약 제12조)

가. 유엔의 요청사항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게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견해가 청취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팬데믹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견해가 청취되고 고려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아동은 발생하고 있는 일을 이해해야 하고,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정들에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¹⁰²⁾

나. 국내적 검토

국내적으로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을 함에 있어 절차적으로 아동의 견해를 청취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예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파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6월 3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5일간 전국의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바, 이 설문조사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약 56만 명이 참여한¹⁰³⁾ 사례는 아동의 견해를 청취한 사례가 될 수 있겠다.

102) UN OHCHR, *op. cit.*, p.36, para. 11. *supra* note 28).

103) 교육부, 보도자료 - 2학기 등교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21. 6. 17.

한편, 2004년부터 전국 10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대표가 모여 아동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이루어져 왔다.¹⁰⁴⁾¹⁰⁵⁾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의결로 정책제안을 정리한 결의문은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된다고 한다.¹⁰⁶⁾ 2020년에도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제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유튜브(Youtube)와 줌(Zoom)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제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아동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¹⁰⁷⁾ 그렇지만 아쉽게도 최종적으로 채택된 결의문에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지 못했다.¹⁰⁸⁾ 아동총회가 형식적인 소통 창구가 아니라 아

104) 이 아동총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3항 제1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인구아동정책관의 소관사무이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10항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이 아동권리과장의 분장사무임에 비추어, ‘아동총회’도 아동권리과장의 소관사무인 것으로 보인다.

105) 현재 대한민국 아동총회의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웹사이트의 ‘아동총회의 취지’ 웹페이지 참조. <<http://kocconet.or.kr/page/purpose2.php>> (2021. 7. 17. 방문).

10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어른 되어 다시 모인 아동대표들, 아동총회 홈커밍데이, 2019. 11. 29.

107) 윤설아, 대한민국아동총회 참석 청소년들 “제2의 형제 참변 안돼”, 경인일보 인터넷판, 2020. 10. 9.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008010001408>> (2021. 6. 21. 방문).

108) 결의문 제7항의 “실내에만 머물러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쌍방향 소통 운동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세요”라는 제안사항이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일한 제안이었다고 보인다. 2020년 제

동과 관련된 정책에 관하여 아동의 견해를 전달하는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총회를 제도화¹⁰⁹⁾하는 한편, 아동대표의 선출, 아동총회의 의제 선정 및 심의·의결의 전 과정이 아동들에게 공개되고 아동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¹¹⁰⁾

8.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아동권리협약 제14조)

아동권리협약 제14조 제1항은 당사국이 아동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은 종교를 표현하는 자유는 공공의 안전, 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종교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종교를 표현하는 자유가 일부 제약되는 상황이 이루어졌다. 다만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아동권리협약 제14조 제3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공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참조. available at <http://kocconet.or.kr/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36> (2021. 7. 17. 방문).

109)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정책위원회’에 ‘아동총회’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중점 추진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4, 2020. 9., 32면.

110) 아동대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대표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비공식기구인 ‘사단법인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규정과 의원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https://youthassembly.or.kr/>> (2021. 7. 17. 방문).

9. 적절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아동권리협약 제17조)

가. 유엔의 요청사항

아동권리협약 제17조는 당사국이 아동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와 감염예방에 관한 정보를 아동이 접근 가능한 언어와 방식으로 널리 알리도록 요청했다.

아동친화적이면서 장애아동, 이주아동 및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접근 가능한 언어와 방식으로, 코로나 19와 감염예방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널리 알릴 것.¹¹¹⁾

당사국은 아동에게 코로나-19 팬데믹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된 접근 가능하고 아동친화적인 형태로, 또는 장애아동, 이주아동 그리고 인터넷 이용이 제한된 지역에 사는 아동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배포해야 한다.¹¹²⁾

나. 국내적 검토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카드뉴스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은 아동의 정보접근권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코로나19에 관한 이러한 정보의 대부분이 감염 예방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코로나바이러스와 코로나19 자체에 대해서는 아동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은 개선되

111) UN OHCHR, *op. cit.*, p.35, para. 10. *supra* note 28).

112) UN OHCHR, *op. cit.*, p.17, para. 5. *supra* note 39).

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전반에 대응되는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작성된 자료가 없는 점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심지어 어린이집용 지침¹¹³⁾과 소아 확진자를 위한 자가치료 안내서¹¹⁴⁾에도 어린이집 원아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쉽게 읽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가득하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해 풀어 쓴 자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대한소아감염학회가 2020년 4월 8일에 함께 마련한 “어린이 자가격리자를 위한 안내문”¹¹⁵⁾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¹¹⁶⁾

10.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34조)

가. 유엔의 요청사항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은 당사국이 아동을 양육자의 폭력,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는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동제한조치로 가

113) 보건복지부, 앞의 지침(각주 72).

114) 중앙방역대책본부, 앞의 자료(각주 74).

115) 중앙방역대책본부·대한소아감염학회, 어린이 자가격리자를 위한 안내문, 2020. 4. 8.

116) 해당 안내문은 소아 확진자를 위한 자가치료 안내서에도 활용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앞의 자료(각주 74), 30면.

정 내에 머무르게 된 아동이 폭력 및 학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아동보호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핵심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필수적인 것으로 정의할 것 그리고 필요 시 가정방문 등 이러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이용가능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 아울러 봉쇄조치 하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동제한조치(confinement)는 아동을 가정 내에서 증가하는 신체적·정서적 폭력에 노출시키거나 아동에게 과밀하고 최소한의 주거기준도 갖추지 못한 집에 머무르도록 강제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 장애아동 및 행동장애아동 그리고 그 가족들은 닫힌 문의 뒤 편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각 국은 TV·라디오·온라인 채널을 통한 감수성 및 인식 제고 활동은 물론 전화·온라인 보고 및 조회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¹¹⁷⁾

아동에 대한 다수의 폭력 및 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아동과 어른이 그 집에 가두어지도록 부과된 이동제한조치는 아동을 증가된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에 노출시킬 수 있다. 당사국은 아동사회보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이용가능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하고, 무료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와 같은 전화 및 온라인 보고·조회 시스템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TV, 라디오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감수성 및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¹¹⁸⁾

나. 국내적 검토

국내적으로도 코로나19 재난 상황 이후로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117) UN OHCHR, *op. cit.*, p.35, para. 6. *supra* note 28).

118) UN OHCHR, *op. cit.*, p.18, para. 6. *supra* note 39).

있다는 점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2020년 8월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아동 방임, 학대 등 위험 노출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¹⁹⁾ 다만, 기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접근하던 아동학대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아동보호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2020년 ‘학대피해 아동보호현황’ 통계가 2021년 7월 17일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어,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아동학대 증가 우려가 현실화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1.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1항)

가. 유엔의 요청사항

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1항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아동에 대한 기존의 질병의 치료에 관한 의료서비스와 코로나19 관련 검사, 치료 및 백신에 대한 서비스 등을 아동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 등 아동을 위한 기본서비스의 제공을 유지할 것.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담 가중과 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검사 및 가능성이 있는 장래의 백신, 코로나19 관련 치료 및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 정신보건 서비스 및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를 포함한 의료에의 접

119) 보건복지부, 앞의 책(각주 109), 6면.

근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¹²⁰⁾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검사, 치료 및 가능성이 있는 향후 백신을 포함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코로나19 관련 의료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증대하는 보건시스템에 대한 압박과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기존의 질병 및 정신건강 등을 위한 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¹²¹⁾

나. 국내적 검토

국내적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및 방역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왔기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의료서비스 붕괴 상황 없이, 팬데믹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1)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아동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문제될 수 있다. 예방 및 방역 조치만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싱가포르, 대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속속 확인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 예방접종을 병행해가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화이자(Pfizer-BioNTech), 모더나(Moderna), 얀센(Johnson&Johnson/Janssen)의 세 가지 백신의 접종을 승인·권고하고 있는데¹²²⁾ 이 중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만 12세

120) UN OHCHR, *op. cit.*, pp.34-35, para. 5. *supra* note 28).

121) UN OHCHR, *op. cit.*, p.18, para. 7. *supra* note 39).

122)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웹사이트 중 “이용 가능한 백신 유형”(Types of Vaccines

이상이면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¹²³⁾ 반면에 세계보건기구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과 동일하게 화이자 백신의 접종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변경했다.¹²⁴⁾ 그렇지만 국내적으로 아직까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에게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의료서비스 자원이 한정된 경우에 아동이 다른 사회 구성원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감염 우려가 높은 대상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는 아동이 백신 예방접종에 있어 후순위가 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하겠다. 세계보건기구도 수석과학자인 소미야 스와미나탄(Soumya Swaminathan)의 설명을 통해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권고하는 이유로, 첫째, 아동이 어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위험이 훨씬 더 낮은 점, 둘째, 이용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이 제한적일 때에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거나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집단이 코로나19 백신

Available) 웹페이지 참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different-vaccines.html>> (last visited July 17, 2021).

123)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웹사이트 중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코로나19 백신”(COVID-19 Vaccines for Children and Teens) 웹페이지 참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adolescents.html>> (last visited July 17, 2021).

124)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식약처, 화이자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 확대, 2021. 7. 16.

접종에 있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들었다.¹²⁵⁾

(2) 가족 중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아동에 대한 정신
보건서비스 지원

2021년 7월 16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누적 사망자는 2,055명에 이른다. 비록 아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없으나,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부모나 다른 가족을 잃는 사례가 2,000건이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염병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사망은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도 아동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한 정책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부모, 가족 또는 간병인을 잃는 일에 따른 사회심리학적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¹²⁶⁾

12.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아동권리협약 제27조)

가. 유엔의 요청사항

아동권리협약 제27조 제1항은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125) 세계보건기구 웹사이트 중 “제42편 - 백신과 아동”(Episode #42 - Vaccines and Children) 웹페이지 참조.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media-resources/science-in-5/episode-42--vaccines-and-children>> (last visited June 21, 2021).

126) UN, *op. cit.*, p.4. *supra* note 30).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비상사태, 재난 혹은 봉쇄 기간 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학교급식계획을 통해서만 제공받는 경우에, 아이들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¹²⁷⁾

물, 위생 등 아동을 위한 기본서비스의 제공을 유지할 것. 아동은 비상사태, 재난 혹은 봉쇄 기간 동안에도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¹²⁸⁾

코로나19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은 아동 특히 빈곤하게 생활하면서 적절한 주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¹²⁹⁾

코로나-19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당사국의 전략은 빈곤을 완화하고 저렴한 음식,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¹³⁰⁾

나. 국내적 검토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대면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종래 학기 중에 학교급식으로 식사를 하던 결식아동의 급식 문제가 대두되었다. 결식 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호¹³¹⁾을 근거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

127) UN OHCHR, *op. cit.*, p.34, para. 4. *supra* note 28).

128) UN OHCHR, *op. cit.*, pp.34-35, para. 5. *supra* note 28).

129) UN OHCHR, *op. cit.*, p.35, para. 6. *supra* note 28).

130) UN OHCHR, *op. cit.*, p.18, para. 8. *supra* note 39).

131)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학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학기 중 중식은 학교급식으로 교육청이 지원하고, 그 외 조식,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다.¹³²⁾ 2020년을 기준으로 결식 아동 급식 지원대상 아동은 308,440명이었다.¹³³⁾ 문제는 대면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되고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급식 공백이 발생하게 되자,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기 중 중식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었는데, 주중을 포함한 매일의 1끼 식사를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여 해결하게 되면서 ① 일반식당에서 식사를 하기에 부족한 지원금액, ② 가맹점 중 부족한 식당 수와 종류, ③ 편의점에서의 패스트푸드 위주 식사에 따른 영양 불균형 등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 것이었다.¹³⁴⁾ 결식아동 급식 문제가 기사화된 후, 2021년에는 아동급식의 지원 단가를 1식(食)당 5,000원 이상에서 6,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고,¹³⁵⁾ 편의점 급식의 경우 구매불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구매가 가능하도록¹³⁶⁾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¹³⁷⁾ 개선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대형마트 푸르트코트를 가맹점에 참여토록 하는 등 취약계층 아동의 음식점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¹³⁸⁾ 그러나 2021년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132) 보건복지부, 2021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2021, 3-4면.

133) *Ibid.*, 4면.

134) 지영의, 코로나19 속 굶주리는 아동들, 쿠키뉴스, 2020. 11. 24.자 참조. available at <<http://kukinews.com/newsView/kuk202011240001>> (2021. 6. 21. 방문).

135) 보건복지부, 앞의 책(각주 132), 27면.

136) 한진주, 물도 못사는 희망급식바우처... 식사대용 메뉴 품목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 2021. 5. 27.자 참조. available at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52710125692754?form=MY01SV&OCID=MY01SV>> (2021. 6. 21. 방문).

137) 보건복지부, 앞의 책(각주 132), 29-30면.

13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복지부-이마트, 롯데마트, 본아이에프 간 아동급식카드

의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상당 수의 아이들이 하루 한 끼만을 지원받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1식(食)당 4,000원~9,000원까지 지원 단가의 편차¹³⁹⁾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적 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단체인 ‘선한 영향력 가게’¹⁴⁰⁾가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¹⁴¹⁾¹⁴²⁾

13. 교육을 받을 권리(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1항 가호)

가. 유엔의 요청사항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1항은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학교가 폐쇄되고 대안으로 온라인 학습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교육의 불평등 가중이나 접근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 학습이 기존의 불평등을 가중시키거나 학생-교사간 소통을 대신하지는 않도록 보장할 것. 온라인 학습은 교실 수업에 대한 창의

가맹점 참여 업무협약 체결, 2021. 5. 3.자.

139) 보건복지부, 앞의 책(각주 132), 67-68면.

140) ‘선한 영향력 가게’ 홈페이지 : <<https://선한영향력가게.com/>>.

141) 보건복지부는 결식 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민간 아동급식 지원사례로 ‘선한 영향력 가게’ 안내를 포함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 앞의 책(각주 132), 70면.

142) 남정미, “애들아, 언제든 편하게 밥 먹으러 와!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게”, 조선일보 인터넷판, 2021. 6. 19.자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1/06/19/KIE6MFL6LVBKFECEI7TPOTFW6Q/?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form=MY01SV&OCID=MY01SV> (2021. 7. 17 방문).

적인 대안이지만, 기술이나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아이들 또는 충분한 부모의 지원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문제를 야기한다. 대안적 해법은 그러한 아이들이 교사가 제공하는 지도·지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유용해야 한다.¹⁴³⁾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교육시설, 특히 초등학교가 폐쇄된 경우 또한 그러한 동안에, 당사국은 모든 학생들이 접근가능하면서 자원과 기술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이 고려된 대체적인 교육방법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¹⁴⁴⁾

나. 국내적 검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534만 명 학생의 2020학년도 1학기 개학이 전면적으로 연기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으나, 온라인 개학과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는 탄력적인 학사 조치를 통해 학교 중심의 정규 교육과정을 중단 없이 이어갔다.¹⁴⁵⁾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 스마트기기 무상대여, 인터넷 통신비 지원, 교육용 콘텐츠 무제한 이용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¹⁴⁶⁾¹⁴⁷⁾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지난 6월 2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2020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피할 수 없었고,¹⁴⁸⁾ 원격수업을 통해 대면수업을

143) UN OHCHR, *op. cit.*, p.34, para. 3. *supra* note 28).

144) UN OHCHR, *op. cit.*, p.18, para. 9. *supra* note 39).

145) 교육부, 앞의 책(각주 94), 30-31면.

146) *Ibid.*, 175면.

147)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앞의 자료(각주 64), 22-26면.

148) 통상 190일의 등교일 중, 초등학교 학생들은 48.6%에 해당하는 92.3일, 중학교 학생들은 46.3%에 해당하는 88.1일, 고등학교 학생들은 54.8%에 해당하는

온전하게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공식 통계인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1)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0년 11월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¹⁴⁹⁾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모든 과목에서 2019년에 비해 교과별 성취수준 4단계 중 1수준¹⁵⁰⁾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은 증가하고, 3수준¹⁵¹⁾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²⁾ 구체적으로 2019년에 비해 교과별 성취수준 1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교과는 중학교 3학년 국어와 영어,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이었고, 교과별 성취수준 3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교과는 중학교 3학년 국어와 수학, 고등학교 국어였다.¹⁵³⁾

104.1일을 등교하였다. 교육부, 보도자료 -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2021. 6. 1., 4면.

149)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 표집학급 학생 21,179명(424개 학교, 전체 학생 771,563명의 약 3%)을 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25일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26일에 실시되었다. 교육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1. 6., 1면.

150) 교과별 성취수준 중 ‘1수준’은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특성을 가지며, 기준 ‘기초학력 미달’ 수준에 해당한다. *Ibid.*, 1면.

151) 교과별 성취수준 중 ‘3수준’은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며, 기준 ‘보통’ 수준에 해당한다. *Ibid.*, 1면.

152) *Ibid.*, 2면.

153) *Ibid.*, 2면.

〈표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단위: %)

구분	1수준 (기초학력 미달)						3수준 이상 (보통학력 이상)					
	중3			고2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2019년	4.1	11.8	3.3	4.0	9.0	3.6	82.9	61.3	72.6	77.5	65.5	78.8
2020년	6.4	13.4	7.1	6.8	13.5	8.6	75.4	57.7	63.9	69.8	60.8	76.7

※ □는 전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표시한 것임

아울러,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에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병행되었는데,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으로 구분하여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든 항목에서 2019년 조사결과에 비해 ‘높음’ 비율은 감소하고, ‘낮음’ 비율은 증가한 경향을 나타냈다.¹⁵⁴⁾ 교육부장관이 브리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학습결손 문제가 단순히 학습보완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신감, 흥미, 학습의욕까지 회복해야하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문제라는 것이다.¹⁵⁵⁾

이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중 표집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이고, 초등학교 학생(6학년)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3년 폐지된 이후 별도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등교일수 자체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된 초유의 교육 위기 상황 속에서, 아동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학습결손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임시적·한시적으로라도 초등학교 학생 중 표집학급 학생

154) *Ibid.*, 8면.

155) 교육부, 앞의 자료(각주 148), 4-5면.

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선생님의 직접 대면 지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학습결손 문제가 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교육 부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로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¹⁵⁶⁾가 있다.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0년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이 2019년에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⁷⁾ 특히 휴업명령 등이 이루어진 1차 조사기간(3~5월 대상) 중에는 사교육 참여율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0%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차 조사기간(7~9월 대상)에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로 감소세가 둔화되었다.¹⁵⁸⁾ 얼핏 보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교육 참여가 감소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사실 2020년 중 학생 등교일수가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정도의 사교육 참여율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¹⁵⁹⁾ 달리 보면, 학교에서의 학습결손을 사교육을 통해 보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¹⁶⁰⁾ 특히 2차 조사시간 중 고등학교 학생의 사

156)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 약 8,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5~6월(3~5월 대상)과 9~10월(7~9월 대상) 2차례에 걸쳐 인터넷(모바일 포함) 및 종이 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이다. 통계청·교육부, 보도자료 -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1. 3. 9.

157) *Ibid.*, 1면.

158) *Ibid.*, 46면.

159) 학원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변경하여 수강한 경우, 참여유형이 ‘학원수강’에서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로 변경될 뿐, 조사대상인 전체 사교육 범위 내에는 포함된다. *Ibid.*, 45면.

교육 참여율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더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¹⁶¹⁾

〈표 4〉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학교급 및 차시별 사교육 참여율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율				
	전체	초	중	고	일반고	전체	초	중	고	일반고	전체	초	중	고	일반고
전체	74.3	83.1	70.9	60.4	67.3	66.5	69.2	66.7	60.7	67.6	-7.9	-13.9	-4.2	0.3	0.3
1차 (3~5월)	74.9	83.2	71.2	62.2	69.4	63.9	65.0	65.2	60.4	67.2	-11.0	-18.2	-6.0	-1.9	-2.1
2차 (7~9월)	73.7	83.0	70.5	58.5	65.2	69.0	73.4	68.2	61.0	68.0	-4.7	-9.6	-2.4	2.5	2.8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2019년 대비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⁶²⁾ 그 중 특히 월평균 소득수준이 300만원~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고, 월평균 소득수준이 8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적게 감소하였다. 그런데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월평균 소득수준 8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와 나머지 가구와의 사교육 참여율을 비교해보면, 다른 모든 소득계층에서 2019년에 비해 800만원 이상 가구와의 사교육 참여율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이 확인된다.

160)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중 ‘일반교과 관련 수강목적별 분포’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선행학습(23.7%, +0.7%)과 학교수업보충(50.0%, +1.5%) 목적의 수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학생에서 증가했다. *Ibid.*, 31면.

161) *Ibid.*, 46면.

162) *Ibid.*, 33면.

〈표 5〉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단위: %)

구분	전체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2019년	74.3	46.4	59.9	70.1	77.7	79.6	83.5	86.5	84.6
800만원 이상대비		-38.2	-24.7	-14.5	-6.9	-5.0	-1.1	+1.9	0.0
2020년	66.5	39.9	50.5	60.3	67.8	71.9	74.2	79.9	80.1
800만원 이상대비		-40.2	-29.6	-19.8	-12.3	-8.2	-5.9	-0.2	0.0
증감	-7.9	-6.5	-9.4	-9.9	-10.0	-7.7	-9.4	-6.6	-4.5

코로나-19로 인한 공교육에서의 학습결손 문제와 함께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 격차 문제가 향후 코로나-19 세대의 학력 격차 문제로 고착화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당국의 현명한 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¹⁶³⁾

14. 휴식,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권리(아동권리협약 제31조)

가. 유엔의 요청사항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와 인

163) 교육부는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사교육 격차 - 학력 격차 - 임금 격차'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교육부, 보도참고자료 - 202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 2021. 3. 9., 15면.

권최고대표사무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학교, 운동장, 공원, 문화시설이 폐쇄되고 물리적 거리두기가 의무화되는 상황 속에서 아동이 휴식,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아동이 휴식,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안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 그러한 해법은 물리적 거리 지침 및 그 밖에 위생기준들을 고려한 ‘최소 1일 1회 이상의 감독 하에서의 야외활동’과 ‘TV, 라디오 및 온라인을 통한 아동친화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포함해야 한다.¹⁶⁴⁾

다수의 학교, 운동장, 공원, 문화시설의 폐쇄를 고려하여, 당사국은 TV, 라디오 및 온라인에서 아동친화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개인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성을 존중하는 외부활동을 배제하지 않고 아동이 이러한 권리들(휴식,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권리)을 향유할 수 있는 대체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¹⁶⁵⁾

나. 국내적 검토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이 허용되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활동에 제약된 상황 하에서 이러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앞서 언급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일부 확인해볼 수 있다.

2020년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 ‘음주’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164) UN OHCHR, *op. cit.*, p.34, para. 2. *supra* note 28).

165) UN OHCHR, *op. cit.*, p.18, para. 10. *supra* note 39).

2019년 조사 결과에 비해 2020년 조사 결과에서 ‘현재 음주율’,¹⁶⁶⁾ ‘위험음주율’,¹⁶⁷⁾ ‘만취경험률’¹⁶⁸⁾ 모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¹⁶⁹⁾ 음주율 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선후배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음주율이 낮아진 것은 긍정적 변화로 보인다.

〈표 6〉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음주율 및 만취경험률 (단위: %)

구분	현재 음주율		위험음주율		만취경험률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전체	15.0	10.7	7.8	5.2	2.2	1.3
중1	3.9	3.7	0.7	0.5	0.3	0.1
중2	7.4	4.9	2.5	1.3	1.3	0.5
중3	11.2	7.8	4.7	3.3	1.9	0.9
고1	17.1	10.9	9.2	5.4	2.7	1.5
고2	22.8	15.8	12.9	8.7	3.5	1.9
고3	25.3	20.9	15.4	12.2	3.2	2.8

2020년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 ‘신체활동 및 근력강화운동’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주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¹⁷⁰⁾

166)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앞의 책(각주 87), 86면.

167)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다. *Ibid.*, 96면.

168)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정신을 잃거나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Ibid.*, 100면.

169) *Ibid.*, 86-105면.

170) 최근 7일 동안 고강도 신체활동(조깅, 축구, 농구, 태권도, 등산, 빠른 속도의 자전거타기, 빠른 수영,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을 20분 이상 한 날이 3일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다. *Ibid.*, 112면.

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019년 조사 결과에 비해 2020년에 더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¹⁷¹⁾ ‘하루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¹⁷²⁾은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 여학생의 경우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 각각 2019년 조사 결과보다 더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었다.¹⁷³⁾ ‘주3일 이상 근력강화운동 실천율’¹⁷⁴⁾은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전 학년에서, 그리고 여학생은 전 학년에서 2019년 조사결과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¹⁷⁵⁾ 이렇게 보면 실외활동이 필요한 고강도

〈표 7〉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신체활동 및 근력강화운동 실천율 (단위: %)

구분	주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				하루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주3일 이상 근력강화운동 실천율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전체	44.8	37.8	18.0	16.5	21.5	19.9	7.3	7.7	33.4	36.8	9.4	10.1
중1	54.6	42.7	28.0	22.9	26.5	22.9	10.7	10.6	32.4	32.3	12.5	13.4
중2	51.4	39.4	22.1	19.8	25.4	21.0	8.1	9.6	32.5	34.4	11.4	11.5
중3	50.0	40.0	21.0	18.4	24.3	22.3	8.0	8.6	33.5	39.4	10.5	11.3
고1	39.8	35.7	12.5	11.8	19.3	17.4	5.7	5.4	34.0	40.1	7.0	8.3
고2	40.4	36.3	13.4	13.0	18.1	19.0	6.2	6.3	34.7	39.3	7.4	7.6
고3	35.2	32.6	12.6	12.6	16.7	16.9	5.6	5.9	33.3	35.8	8.2	8.6

171) *Ibid.*, 112-115면.

172) 최근 7일 동안 운동 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다. *Ibid.*, 116면.

173) *Ibid.*, 116-119면.

174) 최근 7일 동안 근력강화운동(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역기 들기, 아령, 철봉, 평행봉 등)을 3일 이상 한 사람의 비율이다. *Ibid.*, 120면.

175) *Ibid.*, 120-124면.

신체활동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2019년에 비해 줄었지만, 실내에서 가능한 근력강화운동으로 운동을 보충하는 학생의 비율은 더 늘어난 것으로 이해된다.

2020년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 ‘앉아서 보낸 시간’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남학생 중학교 1학년에서 유일하게 주중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낸 시간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될 뿐,¹⁷⁶⁾ 그 외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주중이건 주말이건 2020년에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낸 시간은 2019년에 비해 줄어들고,¹⁷⁷⁾ 학습목적 이외에 앉아서 보낸 시간은 2019년에 비해 늘어났다.¹⁷⁸⁾

한편, 2020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 ‘평균 수면시간’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이 많아진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201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평균 수면시간이 9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증가했다.

〈표 8〉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평균 수면시간 (단위: %)

구분	5시간 미만		5~6시간		6~7시간		7~8시간		8~9시간		9시간 이상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전체	6.4	5.5	14.0	11.0	18.2	17.1	20.9	18.8	22.3	20.4	18.2	27.2
남	5.0	4.0	11.7	8.3	17.6	15.9	21.8	19.6	24.6	21.9	19.2	30.3
여	7.8	7.2	16.5	14.0	18.9	18.3	20.0	18.0	19.8	18.7	17.1	23.8
초등	0.3	0.5	1.0	0.7	3.5	2.5	13.0	7.4	34.8	24.4	47.4	64.5
중	2.6	4.3	8.1	8.3	19.4	16.4	33.2	27.1	28.8	28.5	7.9	15.3
고등	15.1	11.4	30.8	23.3	30.4	31.5	17.3	21.9	5.3	9.1	1.1	2.8

176) *Ibid.*, 125면.

177) *Ibid.*, 125-127면 및 133-135면.

178) *Ibid.*, 129-131면 및 137-139면.

아울러 2020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 ‘수면부족 여부 및 이유’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평균 수면기간이 증가한 2020년에는 수면이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수면이 부족하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특히 전체적으로는 수면이 부족하다고 답한 학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다고 답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면 부족 이유에서도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 수면부족 이유 중 학원, 과외, 가정학습, 채팅, 문자메시지를 답하는 비율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게임, 인터넷, 드라마·영화·음악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다고 답하는 비율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훨씬 증가했다. 특히 남학생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20년에 들어서 게임을 수면부족 이유로 답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늘었고, 여학생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드라마·영화·음악을 수면부족 이유로 답하는 비율이 2020년에 부쩍 늘었다.

〈표 9〉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수면부족 여부

(단위: %)

구분	수면이 부족하다		수면이 부족하지 않다	
	2019	2020	2019	2020
전체	52.5	47.7	47.8	52.3
남	47.0	42.8	53.0	57.2
여	57.8	52.9	42.2	47.1
초등	36.1	34.7	63.9	65.3
중	50.0	47.0	50.0	53.0
고등	68.2	60.3	31.8	39.7

〈표 10〉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수면부족 이유

(단위: %)

구분	수면부족 이유											
	학원, 과외		가정학습		게임		채팅, 문자메시지		인터넷 (동영상·만화·블로그)		드라마·영화·음악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전체	19.4	15.5	22.9	21.5	9.7	13.5	12.3	10.8	12.7	14.9	8.5	11.6
남	18.8	15.0	18.7	17.4	15.0	20.8	10.2	8.3	11.7	13.8	8.1	10.4
여	19.9	15.9	26.6	25.1	5.0	7.3	14.3	13.0	13.6	16.0	8.8	12.7
초등	29.0	17.1	25.6	16.9	15.3	26.0	4.6	4.0	10.0	11.3	11.7	10.0
중	17.5	15.3	18.5	20.4	12.4	12.9	17.3	14.3	16.5	16.7	9.3	13.2
고등	16.5	14.8	24.6	24.9	5.6	7.0	12.5	12.2	11.5	15.7	6.6	11.5

2020년에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고 원격 수업을 들으며 이전보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공부부를 위해 앉아있는 시간은 줄었지만, 더 많이 자고, 운동은 실내에서 근력운동으로 대신했으며, 남은 시간에 남학생들은 주로 게임을 하면서, 여학생들은 주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생활을 했었다고 청소년건강행태조사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가 이를 통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아동들의 이러한 일상생활이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을지는 모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학업 경쟁에 힘겨워 하던 아이들이 아동권리협약 제31조의 휴식,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친구들과 함께 뛰놀며 성장해야 할 초등학생이 게임에 과몰입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5.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처우(아동권리협약 제37조 다호)

가. 유엔의 요청사항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다호는 당사국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에게 인도적이면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고 또한 연령상의 필요가 고려된 방식의 처우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능한 한 구금된 아동을 석방하고, 석방되지 않는 아동에게는 가족과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침이나 지시 위반을 이유로 아동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모든 형태의 구금된 아동을 가능할 때마다 석방할 것 그리고 석방될 수 없는 아동에게는 그 가족과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 많은 국가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혹은 경찰유치장, 교도소, 보호센터, 이주민 수용소·캠프에 갇힌 아동을 포함한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에 대하여 방문 및 연락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해오고 있다. 이러한 제한조치가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제한조치는 아동에게 현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아동은 언제나 그 가족과 직접 아니면 전기통신이나 전화를 통해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비상사태, 재난 혹은 국가가 명한 구금의 기간이 연장된다면, 그와 같은 방문을 금지하는 조치를 재평가하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상황에 있는 아동은 구금되거나 그 동반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¹⁷⁹⁾

코로나19에 관한 국가의 지침 및 지시를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179) UN OHCHR, *op. cit.*, p.35, para. 8. *supra* note 28).

한 아동에 대한 체포나 구금을 금지할 것 그리고 체포되거나 구금된 아동은 즉시 그 가족에게 복귀되도록 보장할 것¹⁸⁰⁾

나. 국내적 검토

(1) 소년원에 송치된 보호소년의 처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8호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9호처분)¹⁸¹⁾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10호처분)¹⁸²⁾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을 보호소년이라고 하는데,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하여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이라 한다)이 규율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원에 송치된 보호소년 중 확진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면회 및 외부교육 중단, 외부인 출입통제, 1일 3회 소독 실시 등 외부 유입원을 원천차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⁸³⁾

보호소년법 제21조는 소년원에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소년원장이 이에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소년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같은 조 제2항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 감염병 유행지역 거주자의 면회, 음

180) UN OHCHR, *op. cit.*, p.35, para. 9. *supra* note 28).

181)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법」 제33조 제5항.

182)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법」 제33조 제6항.

183) 법무부, 보도설명자료 - 소년원·치료감호소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빈틈없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 1. 5.

식물·피복이나 그 밖의 물품 반입 금지’를, 같은 조 제3항은 ‘감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보호소년의 격리수용과 소지품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보호소년법 시행령 제2항에 따르면,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된 후 약 17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소년원장이 17개월 내내 보호소년에 대한 일체의 면회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에 관한 판단이 전적으로 소년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¹⁸⁴⁾ 이는 앞서 아동권리위원회가 요청한 사항과 상충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가 전국적으로 일상이 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소년법과 보호소년법 시행령의 면회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공식적인 예방법 중 하나가 마스크 쓰기인 점을 고려하면, 보호소년에게 매일 1장 이상의 마스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코로나19 재난상황이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보호소년에게 급여하는 물품의 기준을 정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내에 방역물품인 마스크의 급여와 그 급여 기준을 포함시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현행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에는 마스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¹⁸⁵⁾

184) 보호소년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면회의 범위는 평일에 교육 등 일과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1회 40분 이내이다. 보호소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8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4 생활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에 포함된 일상용품으로는 ‘휴지, 치약, 칫솔, 세면비누, 세탁비누, 가루세제, 비누통, 수건, 로션, 샴푸, 옷걸이, 관물함, 물컵, 머리핀, 머리빗, 옷핀, 생리대, 손톱깎이, 주전자, 쟁반, 보온물통, 거울’이 있다.

(2) 코로나19 확진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아동의 처우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의 경우에 모두 입원치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중증도 분류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되면 시설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¹⁸⁶⁾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시설치료 대상인 확진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다. 아동 역시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되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아동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면, 외부와 격리되어 면회가 금지되고, 생활치료센터 내에서도 타인과의 대화 및 접촉이 금지되므로, 생활치료센터 입소 아동은 사실상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해당한다.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활치료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운영 지침¹⁸⁷⁾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입소, 격리실 배정, 생활지원, 청소·소독·폐기물 관리, 질서유지 및 보안, 진료, 모니터링, 격리해제 및 퇴소 등에 관한 사항이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다.¹⁸⁸⁾ 12세 이하 아동이 확진되어 입소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아 확진자 등 자가치료에 준하여 보호자 1인에 한하여 음성인 경우에도 입소가 허용된다.¹⁸⁹⁾ 해당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라는 특성상 외부이탈이나 면회는 금지되어 있으나, 각 격리실에 TV가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이 제공되며¹⁹⁰⁾ 휴대전화, 노트북, 책의 반입이 허용되므로¹⁹¹⁾ 입소 아동이 외부의 가족

186)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2항 제1호.

187)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 2021. 1.

188) *Ibid.*, 43-60면 및 81-104면.

189) *Ibid.*, 43면.

190) *Ibid.*, 49면.

191) *Ibid.*, 128면.

과 연락하거나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인다. 다만 지침과 달리 각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는 있다.¹⁹²⁾

IV. 나오는 말

코로나19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인류와 국제기구 및 각 국가의 정부 앞에 놓인 시험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이 처한 현실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시한 요청사항들을 개별 권리영역별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국내적으로 몇 가지 문제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지난 17개월여 동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방역조치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아동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을 잘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 아동에 대한 정확한 코로나19 통계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로 확진된 아동, 가족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아동은 숫자로만 존재할 뿐, 이러한 아이들이 겪은 그리고 겪게 될 사회적 소외, 심리적·정서적 충격 및 영향에 초점을 둔 지원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감염병예방법을 포함한 법률에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192) 이와 같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아동의 격리생활 중 구체적·개별적 문제점에 관하여는 도승이·김효진·송미령, 앞의 논문(각주 62), 111-117면 참조.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방역대책에 관한 여러 지침들도 저연령대의 아동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렵기만 하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으라고는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정작 코로나바이러스와 코로나19가 무엇이고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 않았다. 방역대책을 포함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견해를 청취하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통계를 포함한 정부 대응이 시의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당장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인으로 성장하는 2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중에 벌써 1년 5개월 동안 이전 세대는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코로나19 아동 세대 전체에게 전생애에 걸쳐 영향을 드리울만한 사건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실태조사와 통계 분석이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보다 자주 여러 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아동종합실태조사¹⁹³⁾를 기간을 당겨 바로 시행할지를 검토해야 할 상황에, 코로나19로 가장 우려되는 아동학대에 관한 통계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도 아동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한 정책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아동과 가족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와 성격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축적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¹⁹⁴⁾

셋째,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기존의 문제를 더 드러내 주었다는 점이다. 사교육에 따른 교육격차는 공교육이 원격교육 중심으로 운용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경제가

193) 지난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018년에 시행되었다.

194) UN, *op. cit.*, p.19. *supra* note 30).

위축된 영향으로 소득 계층간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형태로 나타났다. 결식아동 지원 제도의 문제점도 결식아동이 학교급식이 아닌 결식아동 지원에 온전히 의존하게 되면서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가져 온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가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부정적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학교에 등교일수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아이들은 이전 보다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시도하는 비율이 모두 줄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졌다. 또 아이들은 이전 보다 성장기에 필요한 수면시간을 더 가졌고,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게 근력 운동, 게임, 영화·음악 감상 등을 하면서 이전에 비해 더 휴식과 여가에 시간을 투자했다. 이러한 사정은 아이들에게 학교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도록 한다.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당장 시행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는 했으나, 2021년 2학기부터 전면등교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¹⁹⁵⁾에서 이 점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내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의 코로나 재난상황이 백신 예방접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것인지 아니면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수 년간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아이들과 함께 지내온 경험들은 이미 우리에게 코로나19와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여러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어떠한 선택이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195) 교육부, 보도자료-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2021. 6. 20.자.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2021. 5.
- _____,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1. 6.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2021. 3. 26.
-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 2020. 8. 11.
- _____,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2021. 1. 28.
- 국가인권위원회, COVID-19 관련 국제 인권 규범 모음집, 2020. 5.
-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2020. 2.
- _____, 2021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2021.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2020. 12. 29.
- _____,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 치료센터 운영 지침, 2021. 1.
- _____,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판, 2021. 5. 17.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제2판, 2021. 2. 17.
- 중앙방역대책본부·대한소아감염학회, 어린이 자가격리자를 위한 안내문, 2020. 4. 8.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통계정보보고서, 2019. 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17. 12.
- 김강남, 코로나19로 달라진 이주배경아동의 학습과 일상, 다문화와 평화 제15집 1호, 2021.
- 도승이·김효진·송미령, 코로나19 확진 아동의 경험 : 권리현황과 과제,

- 2021년도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21.
- 신영미·권순범, 코로나19로 인한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변화와 행복감의 관계, 아동과 권리 제25권 2호, 2021.
- 장영인, 코로나19에 대한 시설보호아동의 경험: 권리현황과 과제, 2021년도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21.
- 한진희·심재환·정세원·최진우, 코로나 19로 인한 발달장애 아동의 온라인 교육 문제 탐색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구보고서, 2020.
- 홍관표,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검토, 인권법평론 제26호, 2021.
- 강주리, ‘중국 우한 폐렴’ 국내서 확진자 첫 발생...위기경보 ‘주의’ 격상, 서울신문 인터넷판, 2020. 1. 20.자.
- 교육부, 보도자료 - 2학기 등교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21. 6. 17.
- _____, 보도자료 -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2021. 6. 20.
- _____, 보도참고자료 - 202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 2021. 3. 9.
- _____, 보도참고자료 -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 (7.15), 2021. 7. 15.
- 남빛나라, WHO “델타 변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 변이된다”, 뉴시스, 2021. 6. 19.자.
- 남정미, “애들아, 언제든 편하게 밥 먹으러 와!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게”, 조선일보 인터넷판, 2021. 6. 19.자.
- 법무부, 보도설명자료 - 소년원·치료감호소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빈틈없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 1. 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복지부-이마트, 롯데마트, 본아이에프 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참여 업무협약 체결, 2021. 5. 3.
- _____, 보도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주의→경계” 격상, 2020. 1. 27.
- _____, 보도참고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 브리핑, 2020. 2. 23.

- _____, 보도참고자료 - 어른 되어 다시 모인 아동대표들, 아동총회 홈 커밍데이, 2019. 11. 29.
- _____, 보도참고자료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2021. 7. 9.
- _____, 보도참고자료 -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2021. 7. 14.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 - 검역단계에서 해외유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확인,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대응. 2020. 1. 20.
- _____, 보도참고자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2020. 1. 27.
- _____, 보도참고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현황 (2월 23일 09시), 2020. 2. 23.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보도자료 - 우리나라의 자살현황을 보여주는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2019년 통계 기준), 2021. 7. 2.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식약처, 화이자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 확대, 2021. 7. 16.
- 윤설아, 대한민국아동총회 참석 청소년들 “제2의 형제 참변 안돼”, 경인일보 인터넷판, 2020. 10. 9.자.
- 지영의, 코로나19 속 굶주리는 아동들, 쿠키뉴스, 2020. 11. 24.자.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25일 0시), 2020. 12. 25.
- _____, 보도참고자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0시 기준), 2021. 6. 30.
- _____, 보도참고자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0시 기준), 2021. 7. 8.
- _____, 보도참고자료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 2021. 7. 14.
- _____, 보도참고자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0시 기

- 준), 2021. 7. 17.
- 질병관리청·대한의사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감염병 뉴스레터 No.5 Issue 17, 2020. 9. 3.자.
- _____,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감염병 뉴스레터, No.5 Issue 23, 2020. 11. 25.자.
- _____,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상황, 감염병 뉴스레터 No.6 Issue 01, 2021. 1. 22.자.
- 최경준, 수원에서 ‘코로나19’ 첫 초등학생 확진자 발생, 오마이뉴스, 2020. 2. 19.자.
- 통계청, 보도자료 -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2021. 2. 23.
- _____, 보도자료 - 2020년 혼인·이혼 통계, 2021. 3. 17.
- 통계청·교육부, 보도자료 -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1. 3. 9.
- 한진주, 물도 못 사는 희망급식바우처... 식사대용 메뉴 품목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 인터넷판, 2021. 5. 27.자.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nd Children’s Hospital Association, Children and COVID-19: State Data Report, 2021. 7. 8.
- Laura Lundy *et al*, “Life Under Coronavirus: Children’s Views on their Experiences of their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Vol. 29, Issue 2, 2021.
- UN,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2020. 4.
- UN News, UN Chief calls for greater protection for children caught up in COVID-19 crisis, 2020. 4. 16.
- UN C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KOR/CO/5-6), 2019. 10.
- UN OHCHR, Compilation of statements by human rights treaty bodies in the context of COVID-19, 2020. 9.
- _____, Internal HRTB toolkit of treaty law perspectives and jurisprudence in the context of COVID-19, 2020. 5.

_____, Press Release -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call for human rights approach in fighting COVID-19, 2020. 1. 24.

_____, Press Release - COVID is “a colossal test of leadership” requiring coordinated action, High Commissioner teels Human Rights Council, 2020. 4. 9.

<Abstract>

The Rights of Children amid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Hong, Kwan-pyo*

COVID-19, which was declared a pandemic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on March 11, 2020, has not abated even in July 2021, and rather several variants continue to threaten the lives of all people around the world. The COVID-19 virus itself does not discriminate against people, but the harmful effect of the COVID-19 pandemic is not distributed equally to all members of society. Social crises have a more aggravated impact on poorer countries, poorer regions, poorer families, people in more vulnerable situations, more marginalized people, and the minorities and disadvantaged. This is also true for children. Although children are at a lower risk of corona virus infection than adults, children are more vulnerable to social crises because they are still in their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nd do not lead social and economic life independently.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including community and family, to which they belong, they may be more affected.

The United Nations requested a human rights approach to the response to COVID-19 immediately after the COVID-19 pandemic was officially declared. The UN has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and its negative effects on the enjoyment and realization of children's rights. The UN has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no child is left behind in the response to COVID-19. In this paper, I will take a look the main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on “COVID-19

* Associate Professor/Lawyer, Law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children's rights.” Then, I would like to review the major issues that may arise in relation to the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along with the requests made by the United Nations for each area of the children's rights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check its implications.

Key Words : COVID-19, Pandemic, Infectious Disease, Child, Rights, Human Right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